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Standards for School Libraries Instructional Media and Equipments

송 기 호(Gi-Ho Song)**

목 차

1. 서론	4.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교구·설비의 의미와 중요성	4. 1 문제점
2. 1 교구·설비의 의미	4. 2 개선방안
2. 2 교구·설비의 중요성	5. 결 론
3.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 현황	<부록> :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교구·설비기준 종합
3. 1 법률상의 기준	
3. 2 시·도교육청 학교교구·설비기준	

초 록

교구·설비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기본 요소를 의미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정보활용과 독서지도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사명을 담아야 하며, 교육적 역할에 적합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불충분하다. 따라서 학교교구·설비기준 개정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은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지침; 2. 기본 설비 방안; 3. 교육적 역할에 적합한 교구 기준; 4. 기본 공간별 설비 종목; 5. 보다 상세한 정보기기 종목; 6. 특수학교도서관 기준 개선

ABSTRACT

The standards for instructional media and equipments imply an essential element for curriculum. In knowledge-based society, school libraries are an educational environment to assist curriculum, offer information literacy and reading services. Therefore the standards for school libraries instructional media and equipments are able to suggest the mission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 and it should contain suitable elements for educational roles. But the current standards are insufficient fro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So the standards, if standards for instructional media and equipments are revised, should be contain following contents.

1. facilities guidelines; 2. basic equipment plan; 3. instructional media for educational roles; 4. equipments for each essential area space; 5. more detailed information appliances; 6. improvement of standard for special school library

키워드: 학교도서관, 교구, 설비, 시설, 기준

School Library, Instructional Media, Equipments, Facilities, Standard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2005. 4. 22-23,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영신고등학교 사서교사.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giho7@dreamwiz.com)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5월 20일

1. 서론

학교는 대규모 집단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간에 교육적 작용이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지(校地), 건물, 공작물, 설비 등 시설이 필요하다. 학교시설은 교육과정의 공간적·물적 요소로서 학습을 성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조평호, 김기태 2004, 256-257).

또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경관이나 도서관, 휴게시설, 체육관, 강당과 같은 각종 교육시설은 정서 발달과 자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도서관과 같은 기초시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요구에 맞추어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시설을 구성하는 교구·설비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서 가장 친근하게 사용되며,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교구·설비는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 계획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학교

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16개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등에서 정한 학교도서관 지침,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기준,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선언문(School Library Manifesto)과 학교도서관 지침(School Library Guidelines), IAS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의 학교도서관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교구·설비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구·설비의 의미와 중요성

2.1 교구·설비의 의미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행되는데, 이 교육과정은 교과과정 즉 교재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 교구(instructional media)란 이 교재를 지도하는 교사의 교수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돕고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¹⁾ 그리고 설비(equipments)

1) 교구의 표기는 teaching aids 와 instructional media로 나눌 수 있다. teaching aids는 교수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충적인 의미로, instructional media는 완전한 교수-학습 정보를 제시하는 장치로서 보충적이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자기충족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4, 84). 이러한 현상은 통합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학습 자료의 활용을 중시하며, 교과서만이 완전한 교수-학습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교구의 영문 표기를 단순히 교재를 보충하는 teaching aids대신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instructional media로 하였다.

란 기구·기계·전기·난방·냉방 등과 같이 시설(facilities)에 비해서 작고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 나타난 정의를 보면 교구란,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교육 매체”로, 설비란 “학교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책걸상, 칠판, 실험·실습대, 교구진열대 등과 같이 교육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비치되어 교육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물”로 규정하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04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3).

2.2 교구·설비의 중요성

학교도서관이 자원기반학습(resource-based learning)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시설과 설비 및 교구를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IFLA/UNESCO 의 학교도서관 지침(School Library Guidelines)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학교도서관의 강력한 교육적 역할(strong educational role)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시설, 설비, 가구 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기본 설

비 방향과 전자 및 시청각 기기와 다양한 교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2, 7-10).

또한 1990년대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학교도서관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유능한 전문인력, 재정지원 등과 함께 잘 조직된 자원(resources), 컴퓨터 네트워크(정보화) 등을 학업성취도 향상에 핵심 수단(key ways)이라고 밝히고 있다(Michele Lonsdale 2003, 1).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 측정 연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영역이 상(上)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이, 하(下)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보다 정보활용능력 측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 영역 등급과 해당 학교 중·고등학생의 교육성과 측정 영역별 점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설비 영역 등급과 모든 영역의 상관계수 값이 각각 0.184, 0.312, 0.259, 0.256, 0.252, 0.309로 정상관성을 보이며, 99%신뢰수준에서 sig=0.000(<0.01)으로 정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104-105).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기능인 교수·학습 중

〈표 1〉 시설·설비영역에 따른 교육성과 측정 결과

구분	학생수	정보탐색·접근	정보분석·이해	정보종합·적용	정보표현·전달	정보평가	평가
상	153	61.89	71.98	67.32	57.18	66.43	64.96
중	146	63.23	66.99	42.45	52.60	62.49	61.35
하	146	52.89	59.73	56.58	46.36	55.62	54.23
전체	445	59.37	66.32	61.87	52.13	61.59	60.26

심지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적합한 시설과 교구·설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기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양적·질적 교구·설비 기준이 완비되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 현황

현재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법적 기준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목적 사업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제시한 지침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 기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3.1 법률상의 규정

학교의 시설·설비를 규정하는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서는“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률 제7120호),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학교 교구·설비기준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 ②항에서는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법률 제06906호),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대통령령 제18144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시설·설비기준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통령령 제17397호).

제2조(시설·설비 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 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교사의 내부환경) ①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교사의 내부환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2. 소 음 : 55데시벨 이하
3. 온 도 : 섭씨 18도 이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는 교사(校舍)의 면적기준을 학교 급별로 학생 1인당 필요한 최소기준 면적만을 제시하고 실의 종류와 수, 크기 등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설립자 및 운영자가 학교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법, 교수 학습방법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기남 1998, 21).

그러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시설 및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는 특수학교도서관의 설치와 면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대통령령 제17115호).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 등의 품목 수량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 1항 관련)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면적 기준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 교실을 결합할 수 있다	20석 이상

3. 2 시·도교육청 학교교구·설비기준

현행 학교도서관의 교구·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8조 ②항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에서 정한 교구·설비 이외의 교육자료나 재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교구·설비기준안 작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02 초등학교 교구설비·기준 ; 경기도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 초등학교·특수학교).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학교 교구·설비에 대한 기준을 단위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특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단위 학교에 완전히 위임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을 계속 고시하는 한,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양적·질적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2. 1 시설기준

각 교육청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우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에 설치하는 도서관²⁾의 시설영역과 규격(규모) 그리고 소요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설영역이란 학교도서관을 학교 시설 가운데 어떤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기준에서 보통교실, 체육장, 특별교실, 보건실 등과 함께 공통시설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충북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의 시설 영역구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도서관의 규모와 소요기준을 초·중·고등

2)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도서실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서실이 아닌 학교도서관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정한 관중별 명칭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학교별로 나누어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남교육청으로, 132㎡ 이상 규모의 도서관을 학교당 1개씩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일반교실 1칸 이상, 중·고등학교는 일반교실 1.5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만 66㎡ 이상 규모를 학교당 하나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도서관을 '학급수×2석×1.5㎡'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신축적인 도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면적이 아닌 학급당 면적을 신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제 규모가 일반 교실 1-2칸을 넘지 못한다.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 경북, 전남, 충북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②항에서 정한대로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은 특수학교 도서관의 규모(면적)와 소요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수·설비기준 중 학교도서관 시설관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시·도교육청별 교수·설비기준 중 학교도서관 시설관련 기준

교육청	영역	면적(㎡)	소요기준	비고	
서울	초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중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고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특수	특별실	20석 이상	학교당 1	
광주	초	공통	일반교실 1실 이상	학교당 1	필수
	중	공통	일반교실 1.5칸 이상	학교당 1	필수
	고				
	특수				
대구	초	공통		[학교당 1]	
	중	공통		학교당 1	
	고	공통		학교당 1	
	특수	공통		[학교당 1]	
대전	초	공통			
	중				
	고				
	특수	공통			
부산	초				
	중				
	고				
	특수	공통			
울산	초				
	중				
	고				
	특수				

인천	초	공통			
	중	공통			
	고	특별실			
	특수				
강원	초				
	중	특별실			
	고	특별실			
	특수	도서실			설비항목 필수 설비
경기	초	도서실	66 이상	학교당 1	
	중				
	고				
	특수	도서실			
경남	초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중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고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특수	도서실			
경북	초				
	중				
	고				
	특수	도서실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	
전남	초				
	중				
	고				
	특수	도서실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 령 제4조 ②항 에 준함
전북	초	공통-학생지원시설 (도서실 및 정보자료실)	학급수×2석×1.5㎡		
	중				
	고				
	특수	도서실			
제주	초				
	중	도서실			
	고	도서실			
	특수	도서실			
충남	초	도서실			
	중	도서실			
	고	도서실			
	특수	공통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	
충북	초				
	중				
	고				
	특수				

3. 2. 2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학교교구·설비기준은 교육청에서 단일 고시로 학교 급별 교구·설비를 정한 경우와 학교 급별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고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유치원·초등/중학교 / 고등학교·특수학교(급)로 나누어 고시하였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초등/중학교 / 고등학교·특수학교(급)로, 대전과 충북은 유치원·초등·특수학교(급) / 중·고등학교로, 전북과 강원은 초등/중등(중·고) / 특수학교(급)로 각각 나누어 고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초등·특수학교(급)의 학교교구·설비기준만 고시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구·설비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채, 단위 학교에서 정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on-line], [cited], [http://www.ken.go.kr/division/09/09-index.htm 2005. 05. 11.]).³⁾ 이러한 현상은 학교 급별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시점과, 학교교구·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학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교구·설비기준은 전 교과 공통 기준,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교과교실, 도서관 등에 대한 설비기준 그리고 각 교과영역별 교구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교구기준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의 도서 기준을 학생 1인당 8권으

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청은 초등학교도서관에 e-book을 학교당 1권, 전북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e-book 전자도서시스템을 학교당 1개 구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부산, 경남,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별 교구기준만 있을 뿐, 초·중·고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구·설비종목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강원도와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구·설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기능과 활용에 따라서 공간을 세분하고 각 공간별로 설비기준을 제시한 교육청은 대구, 경북, 전북 교육청 등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 도서관을 ①문헌자료공간 ②영상자료공간 ③전자자료공간 ④교수·학습공간 ⑤대출반납공간 ⑥종합관리공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구·설비종목과 규격 그리고 소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①도서관인테리어 ②인터넷 환경 ③교수·학습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은 ①자료보관 및 열람용 설비 ②멀티미디어기기로 구분하고 있다.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에 별도의 공간 구분 없이 도서관 단위 영역에 대해서 교구·설비종목과 규격 그리고 소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자의 사무공간 설치를 기준에 포함한 경우도 대구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도서관 기준에서 실 당 1개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도서관의 교구·설비 종목에 대해서 구체

3)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육과 사이버 자료실(등록번호 1번, 제목 : NEISE 교구관리 시스템 사용 매뉴얼)에 공지한 교구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구 문제에서는 도교육청 기준안이 몇 년 동안 없어 졌다가, NEIS 사용 때문에 다시 도교육청 기준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지만, 7차 교육과정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교육청 기준안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생들 수준에 따라 알맞은 교육과정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구 및 설비 등을 교과별로 신청하고, 교구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구입,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인 규격과 소요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경북, 전북, 충북교육청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교구·설비종목과 권장 여부만을 표시하고 있다.

16개 교육청의 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교구·설비종목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교구는 도서와 e-book으로 단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설비 종목은 다음 <표 3>과 같이 ①열람용 가구 ②서가류 및 자료보관함 ③영상 전자기기 ④PC 인터넷 설비 ⑤대출반납용 설비 ⑥사무용품 ⑦청소용품 ⑧편의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구·설비 종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 초·중·고등학교도서관 기준에 비해서 종목의 수가 적고 목록카드함과 같이 불필요한 종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 부산, 전북, 충북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설비종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충남교육청은 장애영역별로 도서관에 필요한 기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준에

서 밝히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확대 독서기, 점자타자기, 녹음테이프고속복사기, 비디오테이프 고속복사기, 입체복사기 세트, 국부조명시설, 음성장치, 전자프린터 등 8가지의 설비종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4.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구·설비 기준의 목적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구·설비기준도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운영 목적에 필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현행 교구·설비 기준을 학교도서관 정책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기준 그리고 IFLA/UNESCO 등에서 밝힌 기준 등과 비교하여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

<표 3>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관련 설비종목

책상·의자	서가류 및 자료보관함	영상전자기기	PC·인터넷 설비	대출반납용 설비	사무용품	청소용품	편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용 책상 :6인용, 원형 사각 • 열람용 의자 • PC용 책상 • PC용 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가 :7단, 5단, 3단 • 잡지가 • 신문대 • 신문걸이 • 사전열람대 • 북추력 • CD장 • 비디오장 • 파일캐비닛 • 기기보관함 • 수납선반장 • 주름칸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프로젝션 TV • DVD • DVD+VTR콤보 • VTR, VCR • 실물환등기 • OHP •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 오디오 • 헤드폰(셋) • 음향분배기 (음향분배기) • CD점용카세트 • 녹음기 • 앰프 • 스피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교사용 • 관리용 • 검색용 • 학생용 • PC서버 • LAN선 • 스위칭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관리용S/W • 바코드스캐너 • 코딩기 • 대출반납일력표 • 심진분류표 • 작업대 • 장서인 • 목록카드함 • 카운터 • 납버링 • 북엔드 • 무인도서반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 책상 • 사무용 의자 • 컬러 프린터 • 레이저프린터 • 복사기 • 전화기 • 업무용 캐비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공청소기 • 청소용품보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정화기 • 실링팬 • 사물함 • 신발장점용 • 소파 :직선, 원형 • 개시판, 안내판 • 사인시스템 • 커튼 • 알람용 • 조명 • 냉온수기 • 다목적 교탁 • 냉난방설비 • 조도

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1 문제점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현행 학교서관 교구·설비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나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 당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지침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1. 1 운영 목적과 역할 반영 부족

IFLA/UNESCO(2000)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문맹 교육은 물론 정보소양, 교수·학습, 문화계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각 학교의 목적과 교육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학생들에게 독서와 학습의 즐거움 그리고 평생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 지식, 이해, 상상 그리고 오락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물론 모든 매체의 형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 주어야 한다.

- 지방, 지역, 국가 그리고 범세계적인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견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문화적, 사회적 자각과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 지적 자유와 정보접근은 민주사회에 참여하고,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핵심적인 개념임을 견지 해야 한다.
- 학교도서관의 정보자원 및 서비스는 학교는 물론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독서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IASL이 1993년에 발표한 학교도서관 정책 성명서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며, 교육과정을 위한 핵심 시설로 규정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정보적 기능 :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의 핵심 이다.
- 교육적 기능 : 학습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에 기여한다.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신장시키고, 지적 자유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 문화적 기능 : 심미적 경험, 작품 감상, 창의성 신장, 건전한 인간관계 신장을 통해 평생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레크리에이션 기능 : 다양한 정보 자료와 가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정책의 제1과제가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확충 및 장서확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수적임
 - 학교단위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
- 새로운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필요
 - 수행평가, 재량활동·특별활동 등을 위한 각종 학습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을 촉진하고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학교도서관 위상 정립 필요
- 평생학습사회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함

그러나 현행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6개의 기본 공간으로 세분하여

설비종목을 제시한 대구교육청의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과 교수·학습 환경 등 3개의 기본 공간별 설비종목을 제시한 경북교육청 기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을 고려한 교구·설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8조(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대통령령 제17397호)”는 규정에 의해서, 각 교과 영역별 교구·설비 기준에 사전 등의 참고도서나 시청각 자료 등의 확보 기준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나마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대구(초등학교 도서관 기준 : 학생 1인당 8권), 경기(초등학교 기준 : e-book 학교당 1권), 전북(중·고등학교 기준 - e-book 전자도서시스템 학교당 1개) 등 3개 교육청뿐이다.

결국 현행 기준은 앞서 살펴본 각 기준과 정책에서 밝힌 학교도서관의 정보·교육·문화·레크리에이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교구는 빠진 채, 설비종목의 단순한 나열에 그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운영목적은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1. 2 학교도서관 발전 추세와 설비 종목간의 부조화

교구·설비기준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설비를 구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미디어센터화나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등 활성화 정책 수행과

정에서 제시된 설비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기준 등 학교도서관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현행 기준에 포함된 자료관리 S/W는 학교도서관 정보화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보급된 통합목록 시스템(DLS)의 일반화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설비종목이다. 바코드스캐너, 대출반납표, 분류번호관, 북엔드, 목록카드함, LAN 시설, 진공청소기, 청소용구보관함 등도 다소 현실성이 없는 설비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영상전자기기나 시청각 기기 그리고 학습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4. 1. 3 소요 규격 및 기준의 비현실성

교구·설비의 소요기준은 일반적으로 학교당, 학년당, 실당, 학급당 등으로 제시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체 학년(생)이 이용대상자이면서, 제한된 실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소요기준을 한정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좋은 방법은 실의 규모와 소장 자료의 유형 및 규모 그리고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필수 또는 권장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필요수' 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서는 열람용 책걸상 및 서가류 및 자료보관함 등을 학교당 또는 실당 몇 개라고 제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의 모양과 크기(원형, 사각)까지도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서 성장하는 유기체로서의 역동적인 학교도서관 운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또

한 PC나 영상기기 등의 사양이나 규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제시해 놓고 있어서 교구·설비 기준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 설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설비종목에 대해서는 예산과 활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양(규격)을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 개선방안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교구와 설비 종목의 단순한 배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설과 설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질적 기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개정시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2. 1 시설 지침

학교도서관이 최소 교구·설비를 갖추어 운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정에서 제시된 시설 기준을 토대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보통 단위 학교당 전체 학생수의 일정 비율을 수용하고, 수용 학생 1인당 면적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다음 <표 4>에서와 같이 보통 전체 학생의 10~20% 이상을 수용하고, 초·중등학생 별로 학생 1인당 면적을 0.89~3.7㎡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이병기 2003, 1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 <표 5>에서와 같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한국도서관 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시설 기준을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총 면적이 아니라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공간을 다음 <표 6>에서와 같이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공유공간으로 나누어 각 공간요소별 적정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79-80).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에 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

(2002)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적정규모를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학급 및 학생수를 기준으로 신축 및 개·보수 모형 6가지와 증축모형 2가지 등 모두 8가지의 모형별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최소 시설 기준을 교실 2칸 규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시설 규모를 지금과 같이 학급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수용 비율을 정하고, 학

<표 4> 외국의 학교도서관 면적 관련 기준

출 처	학교도서관 면적 기준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Information Power 1998」	◇초·중등학교의 구분 없이 500명과 1,000명을 기준 ◇1인당 최소 23.6 SqFt(약 2.1㎡)
미국 메사추세츠 주 기준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24%, 중등학교 15% 수용 ◇학생당 40 SqFt(약 3.7㎡)
일본 문부성 기준(1999)	◇열람실의 정원은 재적 학생수의 10% ◇학생 1인당 2.18㎡

<표 5>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

구분	면적(㎡)		비고
	복합건물	독립건물	
초등학교	0.89	0.96	학생 1인당 면적은 재적학생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중학교	1.1.9	1.29	
고등학교	1.32	1.44	

<표 6>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면적 배준 기준

공간요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합건물(%)	독립건물(%)	복합건물(%)	독립건물(%)	복합건물(%)	독립건물(%)
자료공간		55	51	46	42	41	38
이용자공간		16	15	20	18	27	24
직원공간		16	14	21	20	19	18
공유공간		13	20	13	20	13	20

〈표 7〉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모형별 학교도서관 적정 규모(신축 및 개·보수모형)

구 분	모형_1 (1실)	모형_2 (1.5실)	모형_3 (2실)	모형_4 (2.5실)	모형_5 (3실)	모형_6 (3.5실)	비 고
학 급 수	6학급 미만	6~12학급 미만	12~18학급 미만	18~24학급 미만	24~30학급 미만	30~48학급 미만	
학 생 수	210	420	630	840	1,050	1,260	
수용학생수 (수용학생수비율)	24 (11.4%)	36 (8.6%)	41 (6.5%)	57 (6.8%)	84 (8.0%)	90 (7.1%)	PC이용 학생수 포함
실 면적(m ²)	63	94.5	126	157.5	189	220	

- 신축 및 개·보수 모형 (모형 1~6)
- 증축 모형 (모형 7, 8) : 모형 7은 2.5실, 모형 8은 1.5실 복층 규모임
- 위 시설규모는 학교여건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실 수는 일반교실(1실 단위면적 : 63m²)

생 1인당 최소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교과교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급수나 학생수에 따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실 면적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나 학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자료 유형별 또는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4. 2. 2. 기본 설비 방안

구체적인 교구·설비 종목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준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학교도서관의 기본 설비 방향이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을 하나하나 반영한 교구·설비기준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질적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IFLA/UNESCO가 제시한 학교도서관 지침에서는 학교도서관 설비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2, 8).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에 대한 핵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심미적인 외관은 이용자에게 친밀감을 주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적절한 설비를 갖춘 학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안전성
- 적절한 조도
- 도서관의 활동과 이용자 요구, 개별공간에 적합한 기능성뿐만 아니라 견고성, 내구성, 기능성을 갖춘 비품 설계
-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비품 설계
- 최신의 시청각자료기술과 도서관 프로그램, 학교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비품 설계
- 적절한 활용성, 비품과 설비의 안전성, 비용과 재료의 적절성을 고려한 설계
- 다양한 유형의 조직된 자료에 적시에 접근하고 공정한 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비품 배치와 관리
- 이용자에게 심미적인 매력과 여가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비품 배치 및 관리와 깔끔하고 매력적인 안내표시판 구비

특히, 이 지침에서는 교사(校舍)를 신축하거나 재조직하는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이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2, 7).

- 중심부에, 가급적이면 1층에
- 접근성과 모든 교수공간(teaching areas)과의 근접성
- 소음요소 : 교내에서 소음이 가장 작은 곳
- 채광과 조명을 통한 충분하고 적당한 조도
- 장서의 보존과 쾌적한 작업조건을 위한 적당한 실내 온도(냉난방설비)
- 신체장애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설계
- 자료의 유형과 열람 목적에 적당한 크기의 공간 확보
 - : 도서, 소설, 비소설, 표지의 종류(hardback, paperback), 신문, 잡지, 비인쇄 자료별 공간 / 자료의 축적 공간 / 학습공간 / 독서공간 /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 직원 작업공간 / 도서관 데스크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장래의 교육과정과 기술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은 정보와 지식의 양적 팽창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열린교육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열린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의 의

미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 시설과 환경도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갖추어야 한다(김태완 1999, 204-205).

4. 2. 3 교육적 역할에 적합한 교구 기준

학교도서관이 정보, 교육, 독서,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구(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자료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IFLA/UNESCO 2002, 9).

• 자료 수서

도서자료의 적당한 수량은 학생 1인당 10권이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의 연령, 재능,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최신 자료를 최소한 2,500권 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체 자료 중 최소한 60%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비소설자료(non-fiction resources)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대중소설, 음악, 컴퓨터게임,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잡지, 포스터와 같은 여가 목적의 자료를 수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윤리적 기준의 제한 없이 학생의 흥미와 문화를 반영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자자료

학교도서관 봉사 영역에 이용자의 흥미와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전자정보자료에 대한 접근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자료는 인터넷, 특별참고D/B, 전문D/B,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 전자자료는 CD-ROM 과 DVD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ASL의 학교도서관 정책 성명서에서는 적합한 자료가 포함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IASL 1993).

- 정보통신기술의 전체 범위에 대한 인식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여가활동과의 관련성
- 아동의 지적수준과 효과적인 사고기술에 도움이 되는 자료
- 학교의 교수-학습프로그램과의 관련성
- 아동의 흥미 충족
- 학생의 기초언어 사용
- 아동의 가족에 의해서 평가된 문화적 흥미의 반영
- 경제적 여건의 적용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2002)에서는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자료 기준으로 학생 1인 당 적정 도서수를 10권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도서

관협회의 도서관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자료 기준을 일반원칙과 함께 <표 8>과 같이 학교급별 및 자료의 유형별로 기본자료수와 연간 증가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74-77).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현행과 같이 교과영역별로 각각 자료의 소요기준을 분산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미디어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위상에 걸맞게 학교급별 및 자료 유형별로 기본 자료수를 학교도서관 교구 기준에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질 기준으로서 자료선정 일반원칙을 밝혀서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의 지적·사회적·문화적 수준과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장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2. 4 기본 공간별 설비종목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지침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계획할 때 고려할 공간 구

<표 8>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장서 기준

구 분	장서의 종류	기본 장서수	연간 증가수	연평균 제적 및 폐기율
초등학교	도서	학생 1인당 5권 이상	학생 1인당 0.5권	기본 장서의 10% 이내
	연속간행물	학교당 20종 이상		
	시청각장서	학생 1인당 3점 이상	학생 1인당 0.3점	
	전자장서	학생 1인당 1점 이상	학생 1인당 0.1점	
중학교	도서	학생 1인당 10권 이상	학생 1인당 1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30종 이상		
	시청각장서	학생 1인당 5점 이상	학생 1인당 0.5점	
	전자장서	학생 1인당 2점 이상	학생 1인당 0.2점	
고등학교	도서	학생 1인당 15권 이상	학생 1인당 1.5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50종 이상		
	시청각장서	학생 1인당 7점 이상	학생 1인당 0.7점	
	전자장서	학생 1인당 3점 이상	학생 1인당 0.3점	

성요소를 ①학습·연구공간(study and research area space) ②비공식 독서공간(informal reading area space) ③교수공간(instructional area space) ④자료제작·집단프로젝트 공간(production and group project area space) ⑤관리공간(administrative area space)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2, 7).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이 2002년에 마련한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모형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간과 구성 요소는 다음 <표 9>에서와 같이 모두 5개 영역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는 학교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본공간은 ①대출반납공간 ②문헌자료공간 ③영상자료공간 ④전자자료동간 ⑤대집단학습공간 ⑥종합관리공간 등 이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53).

따라서 교구·설비기준에는 자료의 유형별 열람공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자료 등)과 사무작업공간(업무수행, 자료조직 및 매체제작공간), 대출반납공간, 기기보관공간 등 기본 공간을 두도록 하고, 유형별 열람

공간을 대집단 학습이나 독서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 5 보다 상세한 정보화 기기 설비종목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및 자료활용수업의 확산으로 시청각자료 열람과 학습자료 제작에 필요한 시청각 기기와 전자기기의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에서는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정보화 기기를 시청각 기기와 전자기기로 나누어 다음 <표 1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59).

따라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에서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정보교육, 독서교육 등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자료 제작 기기 및 프로그램을 설비종목에 포함시키고 필요수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2. 6 특수학교도서관 기준 개선

학교도서관은 설비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9>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별 기능

공 간	기 능	요 소
문헌자료 공간	인쇄매체 관리 열람 모듬, 개별 학습공간	서가, 열람대, 신문·잡지대, 대출용 PC 등
영상자료 공간	시청각 자료 열람, 개별 혹은 집단 열람	VTR, DVD, CD-ROM부스, 개별청취장치
인 터 넷 공간	인터넷 정보검색 전자자료 활용 수업	학생 및 교사용 PC, 전자자료 보관함, 레이저 프린터
모듬학습 공간	한 학급의 집단 활동	빔프로젝터(선택사항), 열람대, 소파, 실물화상기, VTR
안내 관리 공간	사서교사 업무, 교사열람실 교수·학습자료 제작, 편집	도서검색대, 업무용 PC, 허브 장치, 멀티미디어 제작용 PC, 스캐너 등

〈표 10〉 학교도서관 정보화 기기

시청각 기기	전자기기	
	컴퓨터와 네트워크	디지털 자료 제작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R, DVD 플레이어 · 슬라이드 환등기 · 실물환등기 · 빔프로젝터 · 프로젝션 TV 혹은 TV · OHP 환등기 및 스크린 · CCTV 및 위성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용 PC · 교사용 PC · 업무용 PC · 멀티미디어 제작용 PC · 디지털도서관 서버 · 프린터 · 허브, NIC 카드 · 무선 LAN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캐너 · 칼라레이저프린터 · 바코드스캐너 · 무비카메라 · 디지털카메라 · 동영상편집 장치/프로그램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일반 초·중·고등학교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시설기준이나 설비종목 측면에서 열악하다.

따라서 특수학교 도서관 기준에서는 학생의 장애 유형에 맞추어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 수 있는 설계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IFLA/UNESCO 2002). 특히 각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도 못 미치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상의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비 측면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기준에 포함된 특수도서관 기준을 참고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긴급연락설비(예 : 비상벨프, 안내 방송용 텔레비전수상기 등), 도서관 이용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호출등, 시각장애인 유도용 설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화장실 등을 기본적인 설비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5. 결 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현행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5). 학교도서관의 기대 역할은 이제 단순한 자료의 보관 장소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독서활동과 개별학습 그리고 여가생활의 장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교구·설비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구·설비 기준은 일률적인 양(量) 기준이 아니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목표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적(誘導的) 질(質)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미 중·고등학교도서관의 교구·설비기준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단위 학교에 설치한 '교구·설비편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구·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교육청에서는 기준에 제시한 종목이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새롭게 제작된 교구에 대해서는 '교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02).

그러나 현행 학교 교구·설비기준이 비록 일

부 유도적 질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률적인 양 기준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제시된 교구·설비 기준이 학교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적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아직 부족하고 인적자원은 물론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 자료 등 기본 운영 요소 확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시작 단계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운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훌륭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즉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양 측면에서는 최소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과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사업 등에서 밝힌 시설과 설비 지침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기준을 수용하여야 한다. 질 측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및 IFLA/UNESCO 등의 국제 기준 및 지침 등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발전 방향에 맞추어 시설·설비·교구에 대한 계획 원칙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위 학교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학교도서관 경영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학활동이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on-line]. [cited].
 [http://www.ken.go.kr/division/09/09-index.htm 2005. 05. 11.]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7397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 學校圖書館 活性化 綜合方案.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 2002. 학교시설 설비 계획 및 모형(안).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학교도서관운영편람.
- 김기남. 1998.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한 학교시설·설비기준의 변화”. 『교육시설』, 5(3): 21-24.
- 김태완 “교육 시설 및 설비의 문제와 전망”. 한국교육 문제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204-205
- 김효정. 1997.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 71-104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06906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4호.
- 박재윤. 1994. “미래학교의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시설』,

- 1(2): 85-87.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4. *교육학용어사전*. 전정판. 서울: 하우동설.
- 송기호. 2005.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유호섭, 신일용. 2000. "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학교(한국, 일본)의 평면 분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시설 학회지』, 7(3): 15-22.
- 이병기. 2003.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구축 방안".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구성·운영 방안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재립.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시설 계획". 『교육시설』, 5(3): 17-20.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2000. 장애인 위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운동회 [옮김]. 서울: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협회.
- 주삼환. 2002.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학교 모형". 『교육발전논총』, 23(2): 1-23.
- 조광무. 1997. "열린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현장특수교육』 4(1): 38-47.
- 조평호, 김기태. 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120호.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령령 제17115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학교도서관 평가 적용 및 교육적 효과 측정 연구*.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Michale Lonsdale. 2003. *Impact of School Libraries on Student Achievement: a Review of the Research*. Camberwell: ACER. [on-line]. [cited]. [http://asla.org.au/research/research.h.pdf].
- IASL. 1993. *I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on-line]. [cited]. [http://www.iasl-slo.org/policysl.html 2005. 04. 01.].
- IFLA/UNESCO. 2000. *School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http://www.ifla.org/VII/s11/pubs/manifest.htm 2005. 04. 01.].
- IFLA/UNESCO. 2002. *School Library Guidelines*. [on-line]. [cited]. [http://www.ifla.org/VII/s11/pubs/sguide02.pdf 2005. 04. 01.].
- [시·도교육청별 학교교구·설비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유치원, 초등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중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6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고등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7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특수학교·특수학급*(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8호).
- 광주광역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유·초·중·고·특수학교용*(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4-1호).

- 역시교육청고시 제2004-13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2. 대전광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2-84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3.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3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3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26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2. 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구·설비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1-189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2. 인천광역시중학교교구·설비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2-154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3. 인천광역시고등학교 및 특수학급교구·설비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17호).
- 강원도교육청. 2002. 강원도초등학교 학교교구·설비기준(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2-8호).
- 강원도교육청. 2003.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3-7호).
- 경기도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 초등학교·특수학교(급)(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3-24호).
- 경상남도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 경상북도교육청. 200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구·설비기준: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교구·설비기준(경상북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 전라남도교육청. 2002. 학교교구기준(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01-30호).
- 전라북도교육청. 2002. 초등학교교구·설비기준
- 전라북도교육청. 2005. 중등학교교구·설비기준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5-5호).
- 전라북도교육청. 2003. 특수학교(급)교구·설비기준(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3-1호).
- 제주도교육청. 2003. 제주도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제주도교육청고시 제2003-4호).
- 충청남도교육청. 2002. 충청남도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02-호).
- 충청북도교육청. 2004.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04-7호).
- 충청북도교육청. 2004. 중학교·고등학교 교구·설비기준(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04-6호).

〈부록〉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종합

- ※ 아래의 표는 16개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 기준 중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관련 교구·설비 기준을 도서 등 교구와 설비 종목을 종합하여 작성 함
- ※ 각 교육청의 배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6개 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9개 도교육청 순으로 하고 각각 교육청명의 자모순으로 배열 함
- ※ 설비 종목은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교육청 기준에서 새로 나타난 설비 종목을 계속 추가하여 작성 함
- ※ 표의 배열은 교육청 수와 설비 종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단위로 교육청을 묶고 각각 2개의 표로 나누어서 종합 함
 -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교육청 : 2-1, 2-2
 - 울산·인천·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 : 2-1, 2-2
 - 전북·제주·충남·충북 : 2-1, 2-2

■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교육청 : 2-1

구분	도서	책상 의자	서가류	방송설비	영상전자기기	PC	서버 PC	자료 관리 S/W	암막 겸용 톨 스크린	프린터	복사기	카운터	계사판 안내판	작업대	파일 캐비닛	냉난방 시설	청소 용구 보관함	기타 설비
서울	초	○	○	관장	관장	○	○			○	○	○	○	○	○	○	○	○
	중	○	○	○	○	○	○			○	○	○	○	○	○	○	○	○
	고	○	○	○	관장	○	○			○	○	○	○	○	○	○	○	관장
특수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광주	초		실당 30조	실현	프로젝션 TV 또는 TV 중 1, VR, 빔프로젝터 실당 1	실당 6	실현			실현	실현	실현		실현	관장			
	중		실현	실현 이상	프로젝션 TV 또는 TV 중 1, VCR 실당 1	실당 5 이상				실현	실현							
	고		실현	실현 이상	프로젝션 TV 또는 TV 중 1, VCR 실당 1	실당 5 이상				실현	실현							
특수			서가: 실당 1관장		프로젝션 TV 실당 1	실현					실현	실현						소요량
대구	초	학생당 8	6인조 실당 4 원형: 학교당 2	서가: 좌상수 사전열람대: 학교당 2 복추락 학교당 1 접지: 학교당 1	스파커 - 학교당 1	TV: 학교당 2 VCR: 학교당 1	학교당 2	학교당 4		칼라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중		책상: 실당 4 의자: 실당 35	서가: 실당 3 접지: 실당 1 신문대: 실당 1 관장 사전열람대: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접지: 실당 1관장 음향분배기: 실당 1관장	검색용: 실당 1 학생용: 실당 6 수업용: 실당 1 대출반납용: 1 자료계좌용: 1관장			흑백: 실현 관장 관리지용 레이저: 1관라지용 칼라: 크젯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실당 1
	고		책상: 실당 4 의자: 실당 35	서가: 실당 3 접지: 실당 1 신문대: 실당 1 관장 사전열람대: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접지: 실당 1관장 음향분배기: 실당 1관장	검색용: 실당 1 학생용: 실당 6 수업용: 실당 1 대출반납용: 1 자료계좌용: 1관장			흑백: 실현 관장 관리지용 레이저: 1관라지용 칼라: 크젯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실당 1
특수		실당 15	서가: 실현 관장		DVD+VCR콜로: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대전	초		6인조: 6명당 1 컴퓨터책상: 실당 2관장	서가: 실당 10 신문: 사전대: 실당 1		비디오: 실당 1관장 음향분배기 실당 2관장	실당 1	실당 2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
	중		책상: 실당 5 의자: 실당 30	서가: 실당 5 기타: 실당 1		대형 TV: 1관장 DVD콜로: 1관장	업무용: 실당 1 학생용: 실당 5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고		책상: 실당 5 의자: 실당 30	서가: 실당 5 기타: 실당 1		대형 TV: 1관장 DVD콜로: 1관장	업무용: 실당 1 학생용: 실당 5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특수		소요량				실당 4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부산	초																	
	중																	
	고																	
특수		20조 설비	서가: 실당 1관장 - 설비		TV: 실당 1관장 교구 DVD(VCR): 실당 1-교구	실당 1-교구				실당 1관장 - 설비	실당 1-설비	실당 1-설비						

■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교육청 : 2-2

구분	진공청소기	LAN시설	공기정화기	목욕카드합	바코드스캐너	사물함	전화기	사무용책상	이동식책판	스캐너	소파	사서준비실	장서인	대출반납표	분류반납판	커피팬	복엔드	코팅기	바코드용프린터	무인도서반납기	실링팬	장애학생용시설 (사자장애)	
서울	초	0	0																				
	중			관장																			
	특수	학급당 1관장	포도학급당 2		학급당 1관장	학급당 1관장	학급당 1관장																
광주	초																						
	중						실명															학급당 1-선터	
	특수		희브실명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관장													
대구	초		희브실명 1		실명 1	실명 20관장				실명 1	실명 1관장			실명 1관장									
	중				실명 1관장	실명 1관장								실명 1관장									
	특수	실명 1			실명 1관장	실명 1식		실명 1	실명 1관장	실명 1관장				실명 1관장									
대전	초	실명 1			실명 1			실명 1		실명 1관장		실명 1		실명 1	실명 1	실명 8관장	실명 1관장						
	중				실명 1					실명 1관장				실명 1									
	특수				실명 1	실명 1																확대독서기 : 10 점자타자기 10 녹음테이프고속복사기 1-관장 비디오테이프고속복사기 1-관장 입체복사기 세트 1	
부산	초																						
	중																						
	특수				실명 1-설비														실명-설비			확대독서기 : 2대-교구 국부조명시설 : 5조-설비	

■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교육청 : 2-1

구분	도서	책상 의자	서가류 (서가 잡자가 복층리 사전열람대 등) 자료보관함	방송 설비	영상전자기기 (TV, 오디오, VCR, DVD, 환등기, 빔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등)	PC (업무용) (검색용)	서버 PC	자료 관리 S/W	입막 검색용 스크린	프린터	복사기	카운터	계사판 안내판	작업대	파일 캐비닛	냉난방 시설	청소 용구 보관함	기타 설비
울산	초	○	○	○	○ 관장	○	○			○	○	○	○	○	○	○ 관장		○
	중	○	○	○	○ 관장	○	○			○	○	○	○	○	○	○		○ 관장
	고	○	○	○	○ 관장	○	○			○	○	○	○	○	○	○		○ 관장
	특수	○	○			○				○	○	○	○					○ 관장
인천	초	책상: 6명당 1의자: 1인당 1	서가: 실당 10 신문결이대: 실당 1 사전대: 실당 1 복층리 1-선책		실당 1-선책	실당 1-선책		실당 1-선책		실당 1-선책	실당 1-선책	실당 1			파일박스: 실당 1	실당 1		
	중	책상: 6명당 1의자: 1인당 1	서가: 실당 1 복층리 1-선책			실당 1		학교당 1-선책			실당 1-선책	실당 1				실당 1-선책		
	고	필요수량	필요수량	실당 1-관장	TV, VCR, DVD, 오디오 실당 2-관장 LCD프로젝터 1-관장 프로젝션TV 1-관장	업무용 1 교사용 1-관장 검색용 2 학생용 6		전동스크린 1-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싸인물: 필요수량	실당 1-관장	필요수량 업무용 캐비닛 실당 1	필요 수량 관장			
	특수																	
강원	초																	
	중	○	○	○	관장	○	○			○	○	○	○	○	○	○	○	○
	고	○	○	○	관장	○	○			○	○	○	○	○	○	○	○	○
	특수	○				○				○	○	○	○					
경기	초	e-book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3			
	중																	
	고																	
	특수	소요량	소요량			실당 1 전자자료 열람용: 실당 5			A3-실당 2 컬러실당 1	실당 1								
경남	초																	
	중																	
	고																	
	특수	실당 10	서가: 실당 1		TV(VCR):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실당 1	실당 1					
경북	초	최대 학급의 학생수 이상	○ CD 및 테이프보관함 시청각 기기보관함-관장		LCD프로젝터 1-관장 프로젝션TV 1-관장 DVD플레이어 1-관장 오디오 1-관장	업무용 1 검색용 1	1-관장			레이저 1	관장	관장	관장					
	중																	
	고																	
	특수	○	서가		TV 1	○				○	○	○						
전남	초																	
	중																	
	고																	
	특수	○	서가			○				○	○	○	○					

■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교육청 : 2-2

구분	진공청소기	LAN 시설	공기정화기	목록카드합	비코딩스캐너	사플합	전화기	사무용책갈상	이동식철판	스캐너	쇼파	사서준비실	장서인	대출반납표	분류번호판	커피텐	복엔드	코팅기	바코드용프린터	무인도서반납기	실링팬	장애학생용시설(사자장애)
울산	초																					
	중																					
	고																					
	특수																					기타 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관장
인천	초	실당 1			목록카드 1 청구카드-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		실당 1	실당 1식	실당 8-선택	실당 1-선택				
	중	실당 1																	학교당 1-선택	학교당 1-선택		
	고	실당-관장				학교당 1-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필요수량-관장					
	특수																					
강원	초																					
	중																					
	고																					
	특수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경기	초																					
	중																					
	고																					
	특수				소요량					실당 1												냉온장수기: 1
경남	초																					
	중																					
	고																					
	특수		실당 1			실당 1				실당 1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실당 1-관장
경북	초																					
	중																					
	고		스위칭 허브 8포트 이상 1-관장			1	관장															
	특수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전남	초																					
	중																					
	고																					
	특수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 전북· 제주· 충남· 충북교육청 : 2-1

구분	도서	책상 의자	서기류 (사가 장자가 복유력 사권열람대 등 자료보관함)	방송 설비	영상전자기기 (TV, 오디오, VCR DVD, 환등기 빈프로젝터, 등) 디지털캠코더 등)	PC (업무용) (검색용)	서버 PC	자료 관리 S/W	암막 경용 틀 스크린	프린터	복사기	카운터	제서판 안내판	작업대	파일 캐비닛	냉난방 시설	친소용구 보관함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전북	초	책상 : 6명당 1 의자 : 1명당 1	자료보관함 : 실당 1 사가 : 실당 10 신문열이대 : 실당 복유력 : 실당 1-관장 다목적 교탁 : 실당 1		CD경용 가세트 : 실당 1-관장 헤드폰 : 실당 12-관장 헤드폰분배기 : 실당 2-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중				빈프로젝터/스크린 : 학교당 1 프로젝션TV 또는 LCD프로젝터 택 1:													
	고	e-book 전지도 서시스 템 : 학교당 1-관장	사가 : 학교당 1 신문기 : 학교당 1-관장 장자가 : 학교당 1-관장 복유력 : 학교당 1 사권대 :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VIR : 학교당 1 DVD : 학교당 1-관장 디지털카메라 : 학교당 1-관장 녹음기 : 학교당 1 환등기 :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0-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3	학교당 1		
	특수	학생당 1	사가 : 실당 1		녹음기 : 실당 10	실당 10					실당 1	실당 1	실당 1					
제주도	초																	
	중	○	○	○	관장	○	○			○	○	○	○		○	관장		○
	고	○	○	○	관장	○	○			○	○	○	○		○	관장		○
특수	1명당 1	사가 1			1						1	1						
충남	초	○	○	○	관장	○	○			○	○	○	○	○	관장	○		
	중	○	○	○	관장	○	○			○	○	○	○	○	○	관장		○
	고	○	○	○	관장	○	○			○	○	○	○	○	○	관장		○
특수	○	사가		TV(VIR)	○					○	○	○						
충북	초		자료보관사기: 학교당 6 열람용(3관사기): 학교당 3 낮은사가: 학교당 3-관장 침자가: 학교당 1 사권열람대: 학교당 1 신문대, 신문열이: 학교당 1 CD 비디오보관함: 학교당 1 사정자기보관함: 학교당 1-관장 주립캐비닛: 학교당 1-관장 복유력: 학교당 1 수납선반장: 학교당 1		LCD프로젝터 학교당 1-관장 오디오: 학교당 1-관장 헤드셋: 학교당 12-관장		검색용: 학 교당 6 관리자용: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파일보 관장: 학교당 1		
	중																	
	고	○	○	○		○	○				○	○	○	○	○			○
	특수	소요량	사가 1			4					1-관장	1	1					

